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3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고용진・김병욱・김용민

김주영 • 박상혁 • 양정숙

오영화 · 유후덕 · 이타희

임호선·정일영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 가운데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油)의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라목 중 "중유(重油)"를 "중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용 중유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용 중유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중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	②
(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	4
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	
용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중유(重油)</u> 및 이와 유사	라. 중유(기획재정부령으로
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u>정하는 원료용 중유는 제</u>
	외한다)
마. ~ 자. (생 략)	마. ~ 자. (현행과 같음)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